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의 대상 명확화 등 (안 제30조)

가. 개정이유

- 공항시설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항시설·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변경인가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
- 공항운영증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필요

나. 개정내용

- 활주로 신설 등 중대한 변경사항을 변경인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, 공항운영증명(90→120일) 및 변경인가(60→90일) 기간 확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변경인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하여 공항운영 증명 및 변경인가의 내실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유효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(안 제30조의2)

가. 개정이유

- 「공항시설법」 제38조의2('26.6 신설)를 통해 유효성 검사 근거 마련, 검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

나. 개정내용

- 법에서 위임한 유효성 검사 신청 절차, 내용 등 세부사항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유효성 검사의 신청·검사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공항 안전운영체계의 지속적 유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공항운영증명 및 유효성 검사 시 공항운영검사 면제 (안 제33조)

가. 개정이유

- 안전 감독의 수준·범위가 공항운영증명, 유효성 검사, 공항운영검사 順, 상위 감독 업무 수행 시 업무 중복 해소 위해 공항운영검사 면제 필요

나. 개정내용

- 공항운영검사(정기검사)는 연 1회 실시가 원칙이나, 공항운영증명 및 유효성 검사를 실시한 연도에는 전부/일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중복되는 안전감독을 합리화하여 공항운영자 및 검사기관의 업무 부담 완화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(안 별표13)

가. 개정이유

- 「공항시설법」 제41조는 위반행위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규정, 법정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별 구체적 처분 기준 마련 필요

나. 개정내용

- 공항운영증명 대여 또는 유효성 검사 미시행 시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위반행위별 구체적 처분 기준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분의 일관성·실효성 확보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